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77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문대림 · 주철현 · 이원택
송옥주 · 조계원 · 이병진
윤준병 · 문금주 · 이상식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유기성”을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 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u>유기성</u>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2. ----- ----- ----- <u>가축분뇨를 제</u> <u>외한 유기성</u>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